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ICAO 평가 대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40호)

2025.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2213840)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제안배경	3
2.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4
3. 법 적용의 면제·예외 근거 및 위반죄 신설(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12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221384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맹성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31.
3. 회 부 일 : 2025. 1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대한민국은 1952.12.11. 가입)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정비업·공항운영자·교육기관·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발급하는 공항운영증명에 유효기간을 규정함(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나.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대한 면제·예외가 필요한 경우(전쟁·질병·자연재해·기술발전 등)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제안 배경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 감독체계가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6년 12월 해당 평가 대상임. 이에 개정안은 해당 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 신설(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개정안은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5년의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공항운영증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증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 ④ (생략)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⑤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u>
<u><신설></u>	<u>⑥ 공항운영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유효하다.</u>
<u><신설></u>	<u>⑦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u>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항운영증명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가. 검토의견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¹⁾

기존에는 이러한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ICAO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공항시설법」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면허, 인증, 인가 관련 ICAO 국제기준(Doc9734) 】

원문	국문
3.6 LICENSING, CER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PPROVAL OBLIGATIONS (CE-6) CE-6. Licensing, certification, authorization and approval obligations. The implementation of <u>documented processes and procedures</u> to ensure tha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performing an aviation activity meet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before they are allowed to exercise the privileges of a licence, certificate, authorization or approval to conduct the relevant aviation activity. ... 3.6.3 Certificates and approvals 3.6.3.1 Annexes 1, 6, 8 and 14 require the certification or approval, as applicable, of <u>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s, air operators, aircraft maintenance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aerodromes</u>. In addition, specific aspects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operating minima, training programmes, etc.) should be formally approved by the CAA. Note. — Guidance material on certification and approval is listed in the Appendix to this manual. 3.6.3.3 As applicable and <u>in compli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procedures</u>, certification and approval activities should follow a comprehensive, formal and <u>documented process</u>,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g) <u>renewal or continuing validity of the certificates after appropriate supervision</u>; and h) transfer or surrender of certificates. ...	3.6 면허, 인증, 인가 및 승인 의무 (CE-6) CE-6. 면허, 인증, 인가 및 승인 의무. 정부가 항공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과 조직에게 관련 항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 인증, 인가 또는 승인의 <u>권한을 부여</u>하기 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와 과정을 시행하는 것. ... 3.6.3 인증 및 승인 3.6.3.1 부속서 1, 6, 8 및 14는 <u>전문교육기관(ATO), 항공사, 정비조직인증(AMO) 및 국제공항</u>에 대한 승인 또는 인증을 요구한다. 국제공항의 인증 또는 승인을 요구한다. 또한 회항시간 연장운항(ETOPS), 운항 최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특정 사항은 CAA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고 — 인증 및 승인 관련 지침 자료는 본 매뉴얼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3.6.3.3 국가 법률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인증 및 승인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는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u>문서화된 프로세스</u>를 따라야 한다(이에만 한정되지 않음): g) <u>인증·증명의 갱신(renewal) 또는 인증·증명의 유효성 지속을 위한 적절한 감독활동</u> h) 인증서 양도 또는 반납 처리 ...

※ 자료 : 국토교통부

【 ICAO 안전평가 문항(PQ 8.405) 】

번호	원문	국문
질문	Does the renewal or continuing validity of aerodrome certificates depend on the satisfactory outcome of regulatory surveillance activities?	비행장 운영증명서의 갱신 또는 유효성 유지가 규제 당국의 감시 활동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검토 사항	1) Review established requirement 2) Confirm evidence that surveillance results determine continued validity of the certificate 3) Verify that the State conducts at least one surveillance activity within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e.g. 2 or 3 years), covering all areas addressed during the initial certification process	1) 수립된 요건을 검토한다. 2) 감시 결과가 운영증명서의 유효성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다. 3) 국가는 최초 증명 절차에서 다뤄진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예: 2년 또는 3년) 내에 최소 1회의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의 잔여 유효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변경 인가 시에도 기존의 유효기간이 유지된다는 취지에서 변경된 유효기간이 기존의 잔여기간을 단순히 대체하려는 취지이나, 변경된 유효기간이 잔여기간을 대체하는 것인지, 새롭게 5년이 부여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안 제38조제7항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증명의 갱신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시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공항 운영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공항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국제 항공 네트워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면서 ICAO 기준에 따른 ‘유효기간 갱신’ 요건²⁾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이후에도 공항을 계속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받도록 하여 기존 증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미갱신 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공항운영증명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효기간 제도 신설의 실효성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g) renewal or continuing validity of the certificates after appropriate supervision;
: 인증·증명의 갱신(renewal) 또는 인증·증명의 유효성 지속을 위한 적절한 감독활동

셋째, 부칙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으나 경과조치에서는 기존 공항운영자로 하여금이 법의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항운영증명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존에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현행법상 유효기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증명으로 다시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기존 운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음.

또한 통상 경과조치는 구법 질서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명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개정되는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춘 경우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기존 증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규정 없이 개정 법률 공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증명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어(신규증명의 취득), 기존 공항운영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기존에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증명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유효기간 있는 공항운영증명을 다시 받도록 경과조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안전면허 관련 ICAO 국제기준(Doc 9734)에 따라 유효기간(5년)을 두어 증명을 갱신토록 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에 동의함.

2) 한국공항공사 의견

공항 인증 관련 국제기준인 ICAO Annex14, Doc 9981 및 9774에는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국내 관련법령에 유효기간(5년)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또한,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한 초기 검사와 정기 공항운영검사(매년)의 확인 항목 중 다수가 중복되어, 공항운영증명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것은 단순 행정절차의 반복에 그칠 우려가 있음

현행 공항시설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유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므로, 행정절차 중복 방지 및 안정적인 공

항운영 등을 위해 현행 공항운영증명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법 적용의 면제·예외 근거 및 위반죄 신설(안 제55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전쟁·질병·자연재해, 신기술 개발 등으로 공항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기준 적용의 면제·제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55조의2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55조의2(적용의 면제·예외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의 면제·예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준의 적용의 면제·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u> <u>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공항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2.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보다 면제·예외가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u> <u>3.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면제·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u>

현행	개정안
<신설>	<u>요한 경우</u> 4. 그 밖에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 법의 기준 적용에 대한 면제·예외를 신청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예외를 인정한 경우 인정한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적용의 면제·예외 위반의 죄) ①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사항에 위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② 제55조의2의 면제·예외를 허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항시설법」 내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 및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한 면제·제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외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면제·예외에 관한 해외 사례 】

미국 14 CFR § 11.63

□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관련 적용 대상이 허가 등 요건 적용일 120일 전 또는 현재의 면제가 만료되기 전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면제신청의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관련 면제 허용 시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혹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는 방법이 담보되는 경우에 인정

- 대부분의 면제 신청 사례는 무인항공기 면제에 대한 신청이나 이전에 발급받았던 면제에 관한 사항

호주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 1988) Part VIII Miscellaneous § 98

(1) 총리는 다음에 한하여서는 이 법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a) 이 법에서 정하도록 하거나 허용하도록 한 사항을 정할 것
- (b) 이 법의 시행 또는 시행을 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하기 편리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위
- (c) 안전에 관한 시카고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
- (d) 영토 내 또는 영토 내외 항행안전성과 관련하여
- (e) 항공운항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국가 간의 무역 및 상업에 관한 규정
- (f) 항공 항행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항에 관한 규정

면제에 관한 사항 : 민간항공안전규정(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98, CASR) Part 11과 Advisory Circular AC 11-02

(2) 하위 규정 (1)에서:

예외적 상황이란 주요 자연재해, 일부 다른 대규모 비상사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선언(2020년 국가 비상사태 선언법에 해당)과 관련된 비상사태로서 이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항공 운송 또는 일부 다른 항공 활동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 사이클론 트레이시로 다윈이 파괴된 후, 여객기들은 도시를 가능한 한 빨리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심하게 과부하가 걸렸을 때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됨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비상사태 또는 자연재해가 선포될 필요가 있다는 하위 규정 (1)이 필요하지 않다. (4) CASA는 개인 또는 한 부류의 사람에게 이 조에 따라 면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정 단체의 회원 또는 기타 특성을 참조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5) CASA는 신청 또는 자체 이니셔티브에 따라 면제를 부여
영국 Civil Aviation Act 1982 Sec. 60 항공기 운영 규정의 일시적 면제나 특수 항공기 장비 사용 등에 있어서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연한 관련 제도 적용을 담보하고 있으며, 그 신청 사유는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특히 Civil Aviation Act 1982 Sec. 60에 따르면 영국 항공청 CAA는 공익적 이유나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 항공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
캐나다 Civil Aviation Act 5.9(2) 항공청(TCCA)에서는 항공법 5.9(2)에 따라 항공안전 기준의 면제·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항공기 운항 규정의 일시적 면제나 특수 항공기 장비 사용에 대하여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조종사 면허 및 자격 갱신에 관하여 일시적 면제 등을 인정한 바 있음
중국 항공법 및 운송공항안전편차 및 면제관리방법 및 운송공항사용허가규정 공항 운영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의 미충족 시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 시 관련 규정의 면제·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및 요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방법은 고시와 같은 중국 항공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고시 등의 제정 시 우리법과 같이 명확한 수권 조항 없이도 관련 고시나 지침 등의 제정이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봄

※ 자료 : 국토교통부

이는 ICAO 평가 문항에서도 법령에 면제 인정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ICAO 평가 문항 : PQ 1.027 】

번호	영문	국문
질문	Does the legislation provide for the granting of exemptions?	법령은 면제 인정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가?
검토 사항	Verify that the legislation provides for the granting of exemptions. Notes to the auditor: 1) The provisions should be in the State's primary aviation legislation and/or the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as appropriate for the type of issue addressed. 2)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and procedures is addressed in LEG PQ 1.028. 3) The term "exemptions" also includes exceptions, deviations, variations and prolonged extensions. 4) This PQ does not apply to AIG.	법령에 면제 인정 규정이 있는지 확인 평가관 확인사항: 1) 면제 관련 규정이 해당 국가의 기본 항공 법령 그리고/또는 세부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면제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 여부는 LEG PQ 1.028에서 다루고 있음 3) "면제"에는 예외, 이탈, 변경, 장기 연장도 포함됨 4) 이 PQ는 사고조사(AIG)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 ICAO 평가 문항 : PQ 1.028 】

번호	영문	국문
질문	Has the State established a policy and associated procedures for the granting of exemptions?	국가는 면제 인정에 관한 정책과 관련 절차를 수립하였는가?
검토 사항	Verify that the policy and procedures include: a) the criteria for the conduct and review of risk assessments, analyses, aeronautical studies, etc.; b) the limitations or other conditions imposed, as applicable, when an exemption is granted; and c) the recording and publication of exemptions granted.	정책 및 절차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a) 위험성 평가, 분석, 항공학적 검토 등의 수행 및 검토 기준 b)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제한사항이나 기타 조건 c) 인정된 면제 사항의 기록 및 공표 절차

다만, 「공항시설법」에 따른 각종 기준 등의 규제는 항공기 사고 등을 방지하고 공항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³⁾,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규정한 현행법상 의무를 따르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 전체에 대한 면제·예외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면제가 인정될 경우 현행법의 목적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상황에 대한 면제·예외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전부 부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으며, 특히 제4호 ‘그 밖에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
|--|
| 1.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공항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2.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적용 보다 면제·예외가 공항안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 3.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면제·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3) 최근 개정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037호, 2025. 8. 26., 일부개정]은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와 연결한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며, 종전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2년 이내에 개정된 시설설치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4. 그 밖에 공항안전의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각 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특히 제4호의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등 면제·예외가 가능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조문의 경우 「공항시설법」 전체의 기준 적용의 면제·예외에 대한 특례로서 국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상주업체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부령에 직접 위임하기보다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면제·예외의 범위·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예외를 받은 자에 대해 다른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면제·예외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 체계의 유연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며, 거짓·부정한 면제·예외에 대한 처벌규정도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수단으로 타당함

2) 한국공항공사 의견

현행 제도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대체시설 검토를 통하여 공항운영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항운영규정에 대한 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각 호의 사유는 공항의 안전을 위하여 현행법령의 면제·예외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대한 면제·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안전에 관한 사항에 위해를 끼친 자’라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공항시설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철도건설법과 항만법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고, 항공안전법에서 예외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예외를 인정받아 안

전에 관한 위해를 끼친 자'라는 폭넓은 구성요건으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0